

문화활동의 공공 재정에 관한 통계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on
the Public Financing of Cultural Activities)

제21차 유네스코 총회(베오그라드)에서 채택

문화활동의 공공 재정에 관한 통계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on
the Public Financing of Cultural Activities)

1980년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 21차 유네스코총회는,

헌장 제 4조의 4항에 의해 유네스코가 국제규정을 위해 문서를 초안하고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유네스코헌장 제8조가 특히,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결정한 시기와 양식에 따라 저마다의 교육, 과학, 문화 기관들과 활동들에 관계되는 법규와 규정 및 통계들에 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예술활동의 공공재정에 관계되는 통계를 수집,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국가 당국이 정의, 분류, 발표 문제에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이는 통계의 국제적 비교성을 향상시켜 일반적인 정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과 계획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통계 틀(FCS)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 분류 작업이 유네스코와 여타 유엔 기구들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총회의제 33으로서 문화활동의 공공재정 통계의 국제적 표준화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여,

제 20차 총회에서 이 제안을 국제적 규정의 주제로 하여, 유네스코헌장 제 4조 4항의 의미 안에서 회원국에 대한 권고형식으로 할 것을 결정한 바,

1980년 10월 27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각자 저마다의 입헌적인 관례와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어떤 입법 조치나 여타 조치를 취하여 문화활동의 공공재정에 관한 통계의 국제적 표준화 - 이를 문화활동의 포괄적인 제도(사적 재정을 포함하여)의 발전을 위한 한 단계로 간주하여 - 에 관한 다음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본 권고에 명시된 원리와 기준들을 해당 각국의 국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문화활동의 공공재정에 관한 통계를 수집,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계 당국과 봉사기관에게 본 권고를 주지시키도록 권고한다.

총회는 회원국이 본 권고의 실시를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총회가 정한 날짜에 총회가 결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I. 범위와 정의

범 위

1. 본 권고는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지출(교육과 과학 통계에 포함된 것은 제외)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를 각 회원국에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통계들에 관계되는 것이다.

문화 분야의 정의와 이를 구성하는 활동의 일람표

2. 본 권고의 목적상, 문화 분야의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카테고리 0 — 문화유산

이 카테고리는 기념물의 보존과 과거 보물의 보관, 수집, 전달과 같은 수단으로 문화유산과 문화적 구조물을 보존, 발전시키려는 활동을 포함한다:

0.0 — 역사적 기념물 및 유적지

0.1 — 기록문서 보관소

0.2 — 박물관

0.3 — 고고학적 발굴물

0.4 — 공식적 보호를 받고 있는 여타 형태의 문화유산

0.5 — 정규 교육제도 밖에서 행하는 연구와 훈련

0.6 —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등록에 필요한 활동들

카테고리 1 — 인쇄물과 문학

이 카테고리는 인쇄물, 즉 서적, 정기간행물, 신문 등과 같은 문자로 된 작품을 창조, 제작, 보급하기 위한 활동과 도서관 건립과 그 운영을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1.0 — 문학적 창작

1.1 — 서적 출판

1.2 — 정기간행물과 신문 발행

1.3 — 서적, 정기간행물, 신문의 분배와 판매

1.4 — 도서관

1.5 — 정규 교육제도 밖에서 행하는 연구와 훈련

1.6 — 문학 작품 제작과 인쇄에 필요한 보조 활동

카테고리 2 — 음악

이 카테고리는 악보, 음반, 혹은 연주회의 형식으로 음악 작품을 창조, 제작,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2.0 — 음악 작품 창작

2.1 — 음악 연주(기악 혹은 성악연주)

2.2 — 음악 작품 인쇄, 발행

2.3 — 오페라, 오페레타 등의 가극 공연

2.4 — 음반, 마그네틱 테이프, 카세트 등 녹음된 음악의 제작

2.5 — 음악서적 및 녹음된 음악의 보급과 판매

2.6 — 음악 기계의 생산과 판매

2.7 — 전축과 테이프 레코더 등 음악의 재생과 녹음을 위한 기기의 생산과 판매

2.8 —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2.9 — 음악의 창조와 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보조 활동

카테고리 3 — 공연예술

이 카테고리는 공연예술을 위한 작품의 창조, 제작, 보급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작품들은 흔히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동시에 또한 시각적이다:

3.0 — 공연예술을 위한 작품의 창작

3.1 — 드라마 공연

3.2 — 무용 공연

3.3 — 서커스, 음악당, 카바레, 버라이어티쇼 등 기타 공연예술

3.4 —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3.5 — 강당 임대, 중간매매 서비스, 장비의 제작과 판매 등 공연예술에 필요한 기타 보조 활동들

카테고리 4 — 시각예술

이 카테고리는 회화, 조각, 장식, 혹은 공예품 등의 형태로 시각예술 작품을 창작, 생산, 보급하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4.0 — 시각예술 작품의 창작

4.1 — 시각예술 작품의 발표와 제작

4.2 — 시각예술 작품의 전시

4.3 — 시각예술의 보급과 판매

4.4 —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4.5 — 시각예술 작품의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자료 및 기기의 생산과 판매 등의 기타 보조활동들

카테고리 5 — 영화와 사진

이 카테고리는 영화나 사진 작품의 창작, 제작, 보급을 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5.0 — 영화 창작(영화 필름의 제작)

5.1 — 영화 배포

5.2 — 영화 상영

5.3 — 사진

5.4 —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5.5 — 영화와 사진에 필요한 기타 보조 활동들 (필름, 스크린, 촬영기, 사진기, 음향기기, 영사기 및 영화 상영에 이용되는 건물의 제작과 보급)

카테고리 6 — 라디오와 텔레비전

이 카테고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위한 작품들의 창작, 제작, 보급을 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6.0 — 라디오

6.1 — 텔레비전

6.2 —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6.3 — 방송과 텔레비전에 필요한 여타 활동들 (송, 수신장치 및 방송망의 생산과 판매)

카테고리 7 — 사회문화적 활동들

이 카테고리는 대중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7.0 — 사회문화적 발의, 지역사회 문화센터 및 아마추어 활동의 장려

7.1 — 시민들의 전문적인 모임

7.2 — 여타 사회, 문화적 활동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혹은 철학적 신념과 관련 있는 양식들과 사회적 기능들)

7.3 —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7.4 — 사회, 문화적 활동에 필요한 여타 활동들

카테고리 8 — 스포츠와 게임들

이 카테고리는 스포츠 장비, 운동장과 여타 시설들(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등)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또한 스포츠와 게임의 조직과 관련 있는 활동들도 포함한다:

8.0 —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단체들 (게임과 경기 등의 실시와 조직)

8.1 — 스포츠 장비의 생산, 운동장과 여타 시설의 건설과 유지

8.2 — 정규 교육 제도 밖에서 행하는 훈련

카테고리 9 — 자연과 환경

이 카테고리는 자연과 환경 및 생활의 질과 관계되는 시설과 봉사를 제공·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9.0 — 자연과 관련된 오락활동들 (자연공원, 천연적 휴양지, 공공 해수욕장, 산림 산책로 등)

9.1 — 도시 생활의 질과 관련 있는 활동들 (도시공원, 나무들, 어린이 오락시설 등)

카테고리 10 —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및 위의 다른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들

이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위의 어느 한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시설, 행정적 봉사활동, 그리고 다목적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10.0 —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10.1 — 기능에 따른 분류상 몇 개의 카테고리를 망라하는 다목적 문화시설의 준비와 유지 (예컨대, 음악당, 영화관 혹은 회의장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홀)

10.2 — 위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없는 여타 활동들

일반 정부와 그 구성 기구를 위한 부문의 정의

3. 국가계정 유엔시스템에서의 정의들이 아래에 재현되어 있다. 이 정의들은 본 권고에 규정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사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또한 물질생산제도 - 물질생산계정에 의해 경제활동의 결과를 산정하는 방법 - 를 이용하여 국가 경제를 계획적으로 경영하는 나라들을 포함 개별 국가들의 특징들도 고려해야 한다.

(가) 일반 정부를 위한 부문의 정의: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 혹은 추경예산기금에 계정된 혹은 재정지원을 받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기구가 되어 있는 모든 부처, 사무국, 기타 조직들, 여기에는 원래는 정부의 한 파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혹은 주로 공공 당국의 재정지원이나 통제를 받거나 정부기구들을 보조하는 비영리적인 기관들도 포함된다. 즉, 정부가 부과, 통제 혹은 재정지원을 하는 많은 인구들을 위한 모든 사회보장제도들, 주로 정부 자체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혹은 주로 공공을 위하여 소규모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정부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밖의 여타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은 제외된다.

(나) 일반 정부를 위한 부문을 구성하는 기구들은 다시 다음의 두 하위부문으로 분리된다

(1) 중앙정부의 하위부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일반정부 하에 분류되어 있는 모든 부처, 사무국, 기관들, 그리고 기타 기구들로서 한 국가의 중앙 당국의 기관이거나 기구들인 것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 혹은 추가예산기금에 망라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금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받거나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조직된 사회보장기금들은 제외된다.'

중앙정부의 하위부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구들로 구성된다. ①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문화생활과 관련 있는 여타 부서를 포함한 여러 부서들 ② 정부 부서를 상대로 어느 정도 활동상의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들. 어떤 기관들은 정부 부서와 같이 활동하고 또한 정부 부서로 간주되기도 할 것이다. 또 다른 기관들은 상사와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그들 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일반정부의 관청으로부터 그들 기관이 받는 보조금만은 공공재정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하위부문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중앙 당국을 제외한 주, 지방, 시 혹은 여타 정부기관의 관청들이거나 기구들인 것들로서 일반정부 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처, 사무국, 기관들과 여타 기구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한 하위 부문들도 중앙정부를 위한 하위부문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연방, 지역, 부처, 교구의 행정기구들 ② 공공기관 중에서 부처와 같은 일을 하는 기관들만은 문화활동의 공공경비의 우선 순위에 포함될 것이다.

(다) 일반정부를 위한 두 하위부문의 각각에 대하여서는, 추가예산 그 재정활동(예산조달과 지출)이 그것들을 담당하는 부처의 예산 밖의 공식적인 계정 안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자료의 분류

문화활동에 관한 공공지출의 기능적 분류

4. 문화활동에 관한 공공지출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기능은 문화영역이 세분화된 카테고리들과 상응해야 한다. 그 카테고리들이란 문화유산, 인쇄물과 문학,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와 사진,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회, 문화적 활동들, 스포츠와 게임들, 자연과 환경, 그리고 문화에 관한 일반적 행정과 위의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활동들이다.

문화활동에 관한 공공지출의 경제적 분류

5. 국가계정유엔시스템의 관계자들의 활동을 분류하는데는 동 기구가 제안한 명명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문화활동에 관한 공공지출의 기술에 합당한 경비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드는 경비

(1) 일반행정부 활동(비축물자와 설비)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

(2) 피고용의 급료? 여러 가지 사회보장기구와 보험계획에의 기부를 포함, 각 각의 작업을 위하여 일반정부 기관이 지급하는 임금 총액들. 위의 작업에는 단순한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의 적극적인 개입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총체적인 고정자본형성—여기에는 반드시 문화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시설의 건립(빌딩과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4) 무형자산의 취득, 예술작품의 구입, 예술가위원회 등

(나) 이전

(1) 보조금—이것은 공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보조금의 목적은 새로운 활동의 개발을 장려하고 현 존 활동의 소득을 보충해 주거나 판매가격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다.

(2) 문화활동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가계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 사적 기관에의 일반적 경상이전 예컨대 고고학협회, 문화재보존협회, 문학, 음악, 미술 협회 등에

대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3)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사회적 목적을 위한 창조적인 예술가예의 보조금, 교원 보조금, 연구보조금 등.

(4) 자본이전—이것은 설비 투자를 위한 공기업, 사기업들, 혹은 기업활동을 하는 공공기관들을 위한 것이다.

(5) 해외이전—이것은 보통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문화활동을 위한 것이다.

(6) 정부 부처간의 경상이전—이것은 다음의 두 경우, 즉 ① 중앙정부와 공공 기관 간, 혹은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일어난다.

(7) 일반정부 기구의 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동 기구가 지급하는 여하한 종류의 세금들.

(8) 세금 감면 (서적, 현장공연 등을 위한).

(다) 재정 거래

(1) 특별히 문화활동을 위해 취해진 채무의 상환.

(2) 차관들—어떤 정부 부처들과 공공기구들은 예컨대 출판업자나 영화제작에 대한 대부와 같이 특정의 문화활동을 위해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다.

III. 통계자료의 제출

6. 본 권고에서 다루는 통계들은 중앙정부지출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집계되어야 하며 또한 앞의 2년 기간의 두 번째 해에 효력이 미쳐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비지출은 4년마다 통계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특수한 것들은 앞의 절에서 규정한 정의와 분류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이들 정의 및 분류들과,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의 및 분류들과의 사이에 나타날지도 모를 모순들은 모두 지적되어야 한다. 행정구조와 자료 범위에 관한 국가별 관행들도 문화활동에 관한 공공지출의 통계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보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 통계자료는 복식 부기표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1) 수평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적 분류에 관계되는 자료들;

(2) 수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제적 분류에 관계되는 자료들.

(나) 복식 부기표는 공식기관의 유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1) 중앙정부를 위한 하위부문 : 부처들과 공공기관들;

(2) 주 및 지방정부를 위한 하위부문들 : 지방당국과 공공기관들.

요약표는 가능한 한 언제든지 일반정부기관의 합계 총액을 위해 작성되어야 한다.

(다) 그 자료가 추계(예산상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느냐 혹은 실제로 행해진 거래(회계자료)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라) 하위 카테고리에 의한 자료가 없을 경우 총계자료를 보고할 수도 있다.